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차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3.

발 의 자 : 차지호 · 박희승 · 윤건영
김영진 · 임호선 · 안호영
황명선 · 김현정 · 이연희
김영호 · 이해식 · 최혁진
신정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.

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,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,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.

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,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,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53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정보통신서비스는 제공자는 「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, 같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.
- ⑧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인지한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.
-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삭제되거나 차단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7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④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과태료를

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정보통신서비스는 제공자는 「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⑧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인지한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삭제되거나 차단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제2</u>

제76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	<u>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</u> 제76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⑤ -----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